

2020년도  
추풍령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기 획 감 사 관 )

- 2020년도 추풍령면 -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 기간 및 범위

- 2020. 4. 20. ~ 4. 23.(4일간) / 2017. 5월부터

###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각종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적정여부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 감사결과 》

### ■ 총 지적건수 : 18건

###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8건 (주의 12건, 시정 6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3건 / 317,83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 수범사례 》

### ■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에게 따뜻한 음료 제공

- 민원실 온음료 커피 추출기 비치로 쾌적한 민원응대 분위기 조성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8부. 끝.

#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추풍령 면	총 18건 [공통3, 총무8, 주민복지3, 산업4]	주의 12 시정 6		회수 3건 317,830원
1	공통	◦ 공가 사용 부적정	주의		
2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주의		
3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주의		
4	총무	◦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소홀	주의		
5		◦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주의		
6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60,000원
7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25,470원
8		◦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시정		
9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10		◦ 쓰레기 봉투 관리 소홀	주의		
11		◦ 민방위 장비 및 창고관리 소홀	주의		
12	주민복지	◦ 장애등급 재판정 처리 업무 소홀	주의		
13		◦ 인감시스템 담당자 부재시 발급처리 부적정	주의		
14		◦ 화물트럭 구입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15	산업	◦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연장 관리 소홀	시정		
16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17		◦ 농지원부 관리 소홀	시정		
18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등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32,360원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가사용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사용일	성 명	직 급	사유	비고
2018.05.09.	A	□□7급	충청북도 전입시험	
2018.05.09.	B	□□7급	충청북도 전입시험	
2018.05.09.	C	□□8급	충청북도 전입시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한 때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시험 응시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2018. 5. 9.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7급 A 외 2명의 전입시험 응시에 대해 공가처리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현 황】

○ 당직근무 시 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지연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1	2017.05.18.(목)	08:02:09	20:32:35	□□8급	B	
2	2017.06.11.(일)	08:25:33	17:12:03	□□7급	D	
3	2017.07.09.(일)	07:21:11	17:53:16	□□7급	E	
4	2017.07.19.(수)	08:07:19	18:06:30	□□7급	D	
5	2017.07.20.(목)	07:16:48	17:59:44	□□7급	E	
6	2017.08.17.(목)	08:23:54	19:51:52	□□8급	G	
7	2017.08.19.(토)	08:52:56	16:52:23	□□7급	D	
8	2017.08.22.(화)	08:01:17	18:04:10	□□6급	L	
9	2017.08.26.(토)	08:49:37	17:59:56	□□7급	M	
10	2017.09.03.(일)	08:41:21	17:02:17	□□7급	D	
11	2017.09.15.(금)	08:06:07	18:57:25	□□6급	F	
12	2017.10.01.(일)	09:00:30	18:02:48	□□7급	M	
13	2017.10.06.(금)	08:43:32	17:58:48	□□8급	G	
14	2017.10.11.(수)	08:01:55	18:04:43	□□8급	G	
15	2017.10.14.(토)	07:44:51	17:53:06	□□7급	D	
16	2017.10.26.(목)	08:12:16	18:09:00	□□9급	N	
17	2017.10.29.(일)	08:49:09	17:55:34	□□8급	G	
18	2017.11.10.(금)	08:12:04	19:30:18	□□8급	A	
19	2017.12.17.(일)	08:32:58	17:59:44	□□8급	A	근무일지 미작성
20	2017.12.24.(일)	08:35:41	17:56:00	□□7급	D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21	2017.12.27.(수)	08:14:57	21:12:37	□□8급	C	
22	2017.12.31.(일)	08:51:12	17:57:51	□□8급	B	
23	2018.01.03.(수)	08:10:06	18:01:05	□□7급	D	
24	2018.01.21.(일)	08:34:10	17:53:19	□□7급	D	
25	2018.01.28.(일)	08:54:45	17:58:57	□□8급	A	
26	2018.05.12.(토)	09:26:36	18:00:56	□□8급	T	
27	2018.08.10.(금)	08:03:00	20:21:14	□□6급	K	
28	2018.09.15.(토)	08:01:23	17:59:23	□□7급	U	
29	2018.10.05.(금)	08:04:49	18:10:07	□□8급	T	
30	2018.10.07.(일)	09:00:20	18:01:19	□□8급	G	
31	2018.10.12.(금)	08:08:03	18:21:53	□□7급	J	
32	2018.11.27.(화)	08:00:01	21:01:18	□□9급	O	
33	2018.12.06.(목)	08:05:35	22:14:57	□□6급	H	
34	2018.12.27.(목)	08:21:03	22:07:56	□□7급	J	
35	2018.12.28.(금)	08:01:02	22:48:53	□□9급	O	
36	2019.01.01.(화)	09:00:16	18:03:22	□□8급	G	
37	2019.01.26.(토)	09:00:13	18:03:57	□□7급	Q	
38	2019.02.21.(목)	08:02:00	18:10:54	□□6급	K	근무일자 미수정
39	2019.03.04.(월)	08:03:20	18:50:04	□□9급	O	
40	2019.03.09.(토)	09:34:55	18:01:26	□□8급	I	
41	2019.03.19.(화)	08:00:03	22:20:49	□□7급	P	
42	2019.04.06.(토)	09:01:00	-	□□7급	P	
43	2019.04.17.(수)	08:04:06	22:44:21	□□9급	O	
44	2019.05.02.(목)	08:00:26	22:08:48	□□8급	G	
45	2019.05.17.(금)	08:02:06	18:03:29	□□7급	P	
46	2019.06.14.(금)	08:06:38	18:04:21	□□9급	R	
47	2019.06.25.(화)	08:01:37	22:10:59	□□9급	O	
48	2019.07.05.(금)	08:28:50	18:14:05	□□6급	H	
49	2019.07.18.(목)	08:01:04	18:05:04	□□7급	J	
50	2019.08.27.(화)	08:05:20	23:05:22	□□8급	G	
51	2019.10.07.(월)	08:00:07	20.00.19	□□8급	S	
52	2019.12.09.(월)	08:00:31	18:06:48	□□8급	S	
53	2020.01.07.(화)	08:00:40	22:13:28	□□9급	O	
54	2020.01.22.(수)	08:01:09	18:11:46	□□9급	O	
55	2020.02.25.(화)	08:27:20	22:01:44	□□9급	O	

○ 당직근무 후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현황

구분	근무일자	당직근무자		비고
		직 급	성 명	
1	2017.05.04.(목)	□□7급	E	
2	2017.05.30.(화)	□□8급	A	
3	2017.06.21.(수)	□□7급	E	
4	2017.06.29.(목)	□□6급	F	
5	2017.07.04.(화)	□□8급	A	
6	2017.05.07.(수)	□□7급	E	
7	2017.07.28.(금)	□□8급	A	
8	2017.08.18.(금)	□□8급	A	
9	2017.09.10.(일)	□□7급	G	
10	2017.09.27.(수)	□□8급	A	
11	2017.09.29.(금)	□□8급	A	
12	2017.10.09.(월)	□□7급	E	
13	2017.11.22.(수)	□□8급	A	
14	2017.11.24.(금)	□□7급	G	
15	2017.12.11.(월)	□□7급	E	
16	2017.12.17.(일)	□□8급	A	
17	2018.02.14.(수)	□□7급	E	
18	2018.02.16.(금)	□□7급	E	
19	2018.03.20.(화)	□□8급	A	
20	2018.04.12.(목)	□□7급	E	
21	2018.05.16.(수)	□□7급	E	
22	2018.05.18.(금)	□□8급	A	
23	2018.05.26.(토)	□□7급	E	
24	2018.06.16.(토)	□□7급	E	
25	2018.06.20.(수)	□□7급	E	
26	2018.06.30.(토)	□□8급	A	
27	2018.07.03.(화)	□□8급	C	
28	2018.12.07.(금)	□□7급	E	
29	2018.12.08.(토)	□□6급	H	
30	2018.12.26.(수)	□□7급	E	
31	2019.02.02.(토)	□□7급	I	
32	2019.03.11.(월)	□□8급	J	
33	2019.09.06.(금)	□□6급	H	
34	2019.10.14.(월)	□□6급	H	
35	2019.11.13.(수)	□□6급	H	
36	2020.01.02.(목)	□□6급	H	
37	2020.02.20.(목)	□□6급	H	
38	2020.02.26.(수)	□□6급	K	
39	2020.04.03.(금)	□□6급	V	

##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면장에게 하여야 함.

※ 제19조에 따라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1]과 같이 □□8급 B 등 21명은 평일,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등을 하면서 출근 시 41회 지각으로 인하여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13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세트를 하고 퇴근하였으며, 특히, 2017. 8.19.(토) □□7급 D의 경우 1시간 이상 빨리 퇴근하였고, 2019. 4. 6.(토) □□7급 P의 경우 퇴근 시 1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세트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으며, 2017.12.17.(일) □□8급 A의 경우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청사 보안관리 및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아울러, [현황2]와 같이 □□7급 E 외 9명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9회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위한 당직근무일지 작성 및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특히, □□7급 E의 경우 총 14회, □□8급 A의 경우 총 11회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응북리(구릉)농수로 정비공사	'17. 11. 16.	7,814	210	180	30	과다매입
후리 세천 불록 정비공사	'17. 12. 28.	10,819	430	260	170	“
지봉리(상골)농로확포장공사	'18. 12. 27.	14,254	390	330	60	“
작동리 진입도로 포장공사	'19.06.24.	5,374	140	130	10	“
작점리 농로포장공사	'19.06.24.	11,936	320	280	40	“
상신안리 농로포장공사	'19.06.24.	9,419	440	220	220	“
죽전리(금바위)농로포장공사	'19. 10. 29.	4,792	130	110	20	“
사부리(황보)농로포장공사	'19. 10. 29.	8,247	220	200	20	“
은편리 안전시설 설치 및 배수로정비공사	'19. 12. 24.	14,260	390	340	50	“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통신공사	'19. 12. 31.	2,748	80	60	20	“

###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 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 계약, 용역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2017. 11. 16. 지급한 □□□□과 계약한 응북리(구릉)농수로정비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현 황】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징수·재무관	2018.01.01.	W	X	미보고
	2019.01.01.	X	Y	미보고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2019.08.01.	AA	Z	미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18.01.01.	L	K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인사이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경 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 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 대해서 이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수당지급 지연내역

(단위:천원)

적 요	채 권 자	지급명령 번 호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7. 6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232호	2017. 6.21.	3,000	
2017. 7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356호	2017. 7.19.	3,000	
2017. 8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397호	2017. 8.17.	3,000	
2017. 9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440호	2017. 9.22.	3,000	
2017.11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531호	2017.11.16.	3,000	
2017.12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587호	2017.12.14.	3,000	
2018. 2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83호	2018. 3. 6.	3,000	익월
2018. 3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121호	2018. 3.27.	3,000	
2018. 4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162호	2018. 4.19.	3,000	
2018. 5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201호	2018. 5.24.	3,000	
2018. 6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252호	2018. 6.25.	3,000	
2018. 7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294호	2018. 7.17.	3,000	
2018. 9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374호	2018. 9.19.	3,000	
2018.10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407호	2018.10.10.	3,000	
2018.11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452호	2018.11.09.	3,000	
2018.12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557호	2018.12.27.	3,000	
2019. 1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19호	2019. 1.17.	3,000	
2019. 4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157호	2019. 4.18.	3,000	
2019. 5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217호	2019. 5.22.	3,000	
2019. 6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258호	2019. 6.19.	3,000	
2019. 7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356호	2019. 8.21.	3,000	익월
2019. 8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357호	2019. 8.21.	3,000	
2019. 9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398호	2019. 9.19.	3,000	
2019.10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446호	2019.10.23.	3,000	
2019.11월 이장수당지급	AB 외 14	제507호	2019.11.21.	3,000	
2020. 2월 이장수당지급	AC 외 14	제80호	2020. 2.21.	3,000	
2020. 3월 이장수당지급	AC 외 14	제119호	2020. 3.23.	3,000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2017년 6월 외 26건의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조기 또는 지연[특히 2018. 2월 및 2019. 7월 수당의 경우 익월지급] 지급하여 이장 월정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6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여비 과오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관용 차량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합 계					320,000	160,000	160,000
'18.05.15.	M	'18.04.26.	지방세계납정리 및 선거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05.15.	M	'18.04.27.	지방세계납정리 및 선거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05.31.	M	'18.05.23.	지방세계납정리 및 선거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05.31.	M	'18.05.24.	지방세계납정리 및 선거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12.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13.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14.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15.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16.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19.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20.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26.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27.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28.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29.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18.12.04.	○	'18.11.30.	생산적일손봉사관련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호 및 별표1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7급 M 외 1인에 대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고 1만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된 여비 16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25,47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비상근무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 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 시간	적정 시간	비고
			구분		(분)	(분)	(분)	(분)	
2017-04-08	□□8급	AD	토요일	현업	10:05	18:00	235	240	산불비상근무
2017-04-29	□□6급	F	토요일	현업	10:01	17:58	237	240	산불비상근무
2018-03-31	□□8급	A	토요일	현업	9:23	18:00	37	480	산불비상근무
2020-03-21	□□6급	Z	토요일	현업	10:36	18:00	204	240	-

○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40	108	148	1,495,400	40	96	136	1,369,930	125,470	
□□6급	F	11,074	10	15	25	276,850	10	11	21	232,550	44,300	2017. 4월분
□□8급	AD	8,980	10	47	57	511,860	10	43	53	475,940	35,920	2017. 4월분
□□8급	A	9,246	10	21	31	286,620	10	20	30	277,380	9,240	2018. 3월분
□□6급	Z	12,002	10	25	35	420,070	10	22	32	384,060	36,010	2020. 3월분



###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 초과근무 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읍면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현황1]과 같이 □□8급 AD 외 3명에 대하여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거나 비상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현황2]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125,47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된 수당 125,47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포인트 세입 미조치 현황

카드번호	신용카드회사 (은행)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액 ( '20.1.17기준)	현금전환일자	현금전환금액 (원)	비 고
****_****_****_****	농협	14,522원	-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범위 대상인 2017년 5월부터 2020. 3월 까지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고 신용카드포인트 14,522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현 황】

○ 정기 하자검사 대상 내역

<2018년 상반기>

연번	공사건명	도금액 (천원)	준공일자	하자보증		시공업체
				시작일	종료일	
계	52건	459,484				
1	하산안(뒷길) 농로포장공사	8,694	2015.05.01	2015.05.04	2018.05.03	-
2	죽전(갈태)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1,942	2015.05.04	2015.05.06	2018.05.05	-
3	계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1,362	2015.05.04	2015.05.07	2018.05.06	-
4	계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9,492	2015.05.07	2015.05.11	2018.05.10	-
5	추풍령 포도공동선별장 칸막이 설치공사	4,750	2015.05.08	2015.05.09	2018.05.08	-
6	추풍1구 경로당 마당포장공사	8,230	2015.05.18	2015.05.22	2018.05.21	-
7	사부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623	2015.05.20	2015.05.29	2018.05.28	-
8	상산안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8,850	2015.05.26	2015.05.27	2018.05.26	-
9	사부리(거치장골) 배수로 정비공사	6,889	2015.05.28	2015.05.29	2018.05.28	-
10	추풍령면 도로 유지보수(재배정)공사	2,555	2015.06.08	2015.06.09	2018.06.08	-
11	은편리(오랫골) 배수로 정비공사	11,512	2015.06.08	2015.06.09	2018.06.08	-
12	작점리 농로 및 마을진입로 개보수공사	11,150	2015.06.19	2015.06.20	2018.06.19	-
13	추풍령면(군도4호선) 파손보도 보수공사	4,030	2015.11.23	2015.11.23	2018.11.22	-
14	웅북리 농로포장공사	6,949	2015.11.30	2015.11.30	2018.11.29	-
15	추풍2리 농로포장공사	12,092	2016.6.16	2016.06.17	2019.06.16	-
16	작점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10,236	2016.5.25	2016.05.26	2019.05.25	-
17	계룡리 대피소확장 및 배수로설치공사	13,239	2016.6.10	2016.06.13	2018.06.12	-
18	후리 배수로설치공사	5,981	2016.5.13	2016.05.13	2019.05.12	-

연번	공사건명	도금액 (천원)	준공일자	하자보증		시공업체
				시작일	종료일	
19	지봉리 행동경로당 뢰스 설치공사	9,281	2016.06.14	2016.06.14	2018.06.13	-
20	후리 마을안길정비공사	6,905	2016.6.13	2016.06.17	2019.06.16	-
21	죽전리 배수로설치공사	11,835	2016.6.7	2016.06.07	2018.06.06	-
22	계룡리 다목적창고 옹벽 설치공사	10,282	2016.6.8	2016.06.07	2019.06.06	-
23	하신안리(뒤통골) 농로포장공사	6,026	2016.05.24	2016.05.24	2019.05.23	-
24	상신안리 농로포장공사	7,957	2016.6.9	2016.06.09	2019.06.08	-
25	사부리 농로포장공사 및 배수로설치공사	6,010	2016.5.10	2016.05.10	2019.05.09	-
26	환경미화원 휴게실 창호교체	3,680	2016.5.19	2016.05.22	2018.05.21	-
27	면사무소 외장사인 설치	17,550	2016.6.11	2016.06.17	2018.06.16	-
28	추풍령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324	2016.5.24	2016.05.24	2019.05.23	-
29	추풍2리 석축 보수공사	9,159	2016.7.6	2016.07.08	2018.07.07	-
30	추풍령(계룡)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	3,399	2016.7.20	2016.07.25	2018.07.24	-
31	죽전리 장자골 배수로 설치공사	11,242	2016.12.8	2016.12.09	2018.12.08	-
32	추풍령면 보도파손 보수공사	3,793	2016.09.13	2016.09.22	2019.09.21	-
33	추풍령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4,550	2016.11.17	2016.11.17	2018.11.16	-
34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	12,600	2016.12.09	2016.12.12	2019.12.11	-
35	추풍령면 재활용선별장 포장공사	10,838	2016.11.21	2016.11.21	2019.11.20	-
36	학동(구리기) 농로 포장공사	10,695	2016.12.05	2016.12.06	2019.12.05	-
37	추풍령면 보도파손 보수공사(2차)	3,823	2016.11.15	2016.11.28	2019.11.27	-
38	작동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2,609	2017.05.31	2017.06.01	2020.05.31	-
39	상신안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1,319	2017.05.16	2017.05.17	2020.05.16	-
40	하신안리(계룡골) 옹벽설치및배수로정비공사	11,997	2017.05.31	2017.05.31	2020.05.30	-
41	지봉리(웃골) 배수로 정비공사	10,683	2017.06.01	2017.06.01	2019.05.31	-
42	후리 세천복개 및 우물 정비공사	6,133	2017.06.01	2017.06.01	2020.05.31	-
43	계룡리(덕곡) 농로 포장공사	7,492	2017.05.15	2017.05.15	2020.05.14	-
44	죽전리(공중골) 농로 포장공사	9,733	2017.05.22	2017.05.22	2020.05.21	-
45	죽전리(뒷골) 배수로 정비공사	6,406	2017.05.26	2017.05.26	2019.05.25	-
46	작점리 마을회관 앞 가드레일 설치공사	4,950	2017.05.21	2017.05.21	2020.05.20	-
47	하신안리(앞들) 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공사	7,324	2017.05.15	2017.05.15	2020.05.14	-
48	웅북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260	2017.05.21	2017.05.21	2020.05.20	-
49	지봉리(모산) 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공사	9,953	2017.06.01	2017.06.01	2020.05.31	-
50	추풍령2리 정자 설치공사	16,083	2017.06.23	2017.06.23	2019.06.22	-
51	작동리 창고 마당포장 및 농로 재포장	10,115	2017.06.30	2017.06.30	2019.06.29	-
52	후리 세천 블록 정비공사	11,902	2017.12.20	2017.12.20	2019.12.19	-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추풍령면에서는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인 「하신안(뒷길) 농로포장공사」 외 51건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쓰레기봉투 관리 소홀

【현 황】

○ 일반용 쓰레기봉투 관리대장(수불부) 현황

구분	일 반 용				
	5 ℓ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대장상 수량	3,800	2,669	1,172	1,130	-
실 제 수량	3,800	2,543	172	630	-
증 감	-	-126	-1,000	-500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및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규정에 따라, 추풍령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공급 또는 무상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대장(수불부)상의 재고량과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의 정비 등을 통한 원인파악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쓰레기봉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방위 장비 및 창고관리 소홀

【현 황】

○ 민방위 장비 (지휘용 앰프) 현황

품 명	형식번호	제조년월일	제조사	활용여부	비고
무선확성기	전 1-11-829	1982.05.06	한국트리카 합 동 전 자	부	

【위법부당사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계획에 따라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등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장비 및 물자로는 대피시설(대피호), 소방 (소화기, 갈퀴, 삽 등 소화 장비) 및 경보장비 (싸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등), 등화 관제시설 (차광장치, 옥내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 장치)등이 있으며, 담당자는 활용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시 즉시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보관 하여야 한다.

- 추풍령면에서는 민방위 장비를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보관 하여야 함에도 민방위 장비 중 무선확성기가 노후화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하여 관리·보관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민방위 창고를 타 목적의 창고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민방위 창고를 이용함에 있어 통로가 항상 확보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처리 업무 소홀

【현 황】

신 청 인			장애유형	장애 등급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1947.**.**.	-	지체 (하지기능)	4급	2017.05.20.	2017.05.31.	경증장애

【위법부당사항】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소정 기일 내에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재진단 기한 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함을 안내 하여 지정도래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서를 발송한 후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 장애 등급 재진단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처리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감시스템 담당자 부재 시 발급처리 부적정

【현 황】

○ 인감시스템 부적정 발급 현황

연번	성 명	구분	발급일	발급자	대체발급자	발급건수	비고
합계	15회					49건	
1	N	연가	2018.01.12	N	K	2건	
2	N	연가	2018.03.02	N	K	2건	
3	N	관외출장	2018.04.04	N	K	4건	
4	N	연가	2018.04.12	N	K	2건	
5	N	연가	2018.04.13	N	K	6건	
6	N	공가	2018.04.27	N	K	1건	
7	N	특가	2018.05.08	N	K	3건	
8	N	특가	2018.06.15	N	K	4건	
9	N	연가	2018.08.13	N	K	4건	
10	N	연가	2018.08.14	N	K	5건	
11	N	관외출장	2018.09.10	N	K	4건	
12	N	관외출장	2018.09.11	N	K	1건	
13	N	관외출장	2018.09.12	N	K	1건	
14	R	특가	2018.11.08	R	K	8건	
15	R	대체휴무	2019.03.29	R	K	2건	

## 【위법부당사항】

-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망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계정 중복사용 및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여 인감증명 발급의 원활을 기하고 인감시스템을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2010년도에 「인감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인감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인감업무 지원자에게만 사용자계정을 허용하고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ID사용권한자 자리 이석 시 전원차단 또는 로그아웃 등의 안전 조치와 중식시간을 포함한 장시간 이석 시 대직자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관장 책임하에 사용자계정을 부여하고 인감정보의 임의사용에 대해 사고발생시 관리책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인감자료관리 및 사용자권한 관련 책임과 운영기준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예규제193호, 2008.09.09.)」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이용 및 운영관리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 7. 26.)」 제12조에 따라 기관의 사용자가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권한을 부여 받은 예비사용자(대직자)로 하여금 인감을 발급토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자가 연가·공가·특가, 관외출장, 대체휴무 등으로 총 15회 부재하였음에도 사무분장표에 따른 업무대행자인 주민복지팀장은 본인의 사용자권한이 아닌 부재중인 담당자의 사용자권한으로 49건의 인감을 부적절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화물트럭 구입 전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 물품구매 현황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용도	집행일 (계약일)	계약방법	지급액 (천원)	비고
계							25,480	
화물트럭	1톤	1	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8.05.08. (18.05.08.)	조달구매	18,330	
	1톤 덤프장치 외	1	식		18.06.01. (18.06.01.)	수의계약	7,150	

【위법부당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객관적 위치에서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제도인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집행 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추풍령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 소형 화물트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018.05.08.에 추정금액 18,330천원, 2018.06.01.에는

추정금액 7,150천원으로 합계 25,480천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최종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구매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연장 관리 소홀

【현 황】

○ 기간만료 광고물 현황

광고물명 (설치장소)	종류	설치자		허가일	만료일	기간종료 안내	연장 신청
		주소	성명				
****(주) (사부리 ***)	지주이용간판	-	-	17.11.17.	19.09.05.	-	-
****(주) (사부리 ***)	벽면이용간판	-	-	17.11.17.	19.09.05.	-	-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그럼에도, 추풍령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 외 1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자에게 표시기간 종료 사전알림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신고일	신고 사항	신 청 인		차량번호	비 고
		주 소	성 명		
2017.01.12.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2.01.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2.06.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2.21.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2.21.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2.23.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2.27.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3.29.	사용 신고	-	-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증명서 사본첨부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4.11.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4.11.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4.25.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5.18.	사용 신고	-	-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기재 누락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5.24.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7.06.09.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신고일	신고 사항	신청인		차량번호	비고
		주소	성명		
2017.06.13.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7.06.15.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22.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22.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6.22.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23.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26.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7.07.28.	사용 신고	-	-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기재 누락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9.01.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7.09.05.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10.16.	번호판 재발급	-	-	-	구비서류 없음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등록증)
2017.10.16.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10.16.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11.13.	폐지 신고	-	-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날인 누락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2.21.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3.12.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3.22.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4.23.	폐지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4.30.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4.30.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8.05.01.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5.31.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6.04.	폐지 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6.05.	사용 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8.06.05.	변경 신고	-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날인 누락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누락

신고일	신고사항	신청인		차량번호	비고
		주소	성명		
2018.06.11.	사용신고	-	-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양수인 기재 누락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6.21.	폐지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b>사망에 따른 상속증명서류 누락</b>
2018.06.21.	폐지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6.21.	폐지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6.25.	폐지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b>사망에 따른 상속증명서류 누락</b>
2018.07.18.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8.10.	폐지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8.13.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8.20.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증명서 양도일 미기재
2018.08.27.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8.29.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8.29.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9.14.	폐지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10.08.	사용신고	-	-	-	<b>인지세 미납</b> 신고 대리인 증빙서류 누락
2018.10.16.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11.09.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11.19.	사용신고	-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날인 누락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11.21.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12.10.	사용신고	-	-	-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 누락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12.14.	변경신고	-	-	-	<b>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증명서류 누락</b>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9.01.29.	변경신고	-	-	-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9.01.29.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9.03.08.	변경신고	-	-	-	<b>인지세 미납</b>
2019.03.29.	사용신고	-	-	-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폐지신고신고서와 함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폐지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날인을 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 현황에서와 같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폐지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의 서식이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2017.10.26.)되었음에도 개정 전 서식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서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분실에 따른 소유인 각서)를 추가로 징구하였으며, 특히,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하면서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발행을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지원부 관리 소홀

【현 황】

신청인 (소유인)	농지주소	경작 구분	면적 (㎡)	전용면적 (㎡)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일	농지원부 최종확인일
*** (***)	추풍령면 신안리 ***	자경	87	87	2017-08-07	2014-03-19
*** (***)	추풍령면 작점리 ***	자경	2,116	2,116	2017-09-27 2017-12-04	2014-06-18
*** (***)	추풍령면 추풍령리 ***	자경	4,342	3,997	2018-10-16	2012-08-30

###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농지전용 신고 되고, 착공 건축물 사용 승인된 필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미정리된 농지원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32,3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등 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등 보상금 부적정 지급 현황

연도	마을명	신청자명	벼 재배면적(㎡)	지급액(원)	비고
합계		4명		32,360	
2017년	추풍령면 계룡리	***	885	7,020	우량종자
2017년	추풍령면 계룡리	***	904	7,170	"
2017년	추풍령면 추풍1리	***	913	7,240	"
2019년	추풍령면 웅북리	***	585	5,670	"
2019년	추풍령면 웅북리	***	585	5,260	경영안정

【위법부당사항】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기하고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벼 재배농업인에게 도비 30%, 군비 7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0.1ha 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내 거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공부확인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대

상자를 확정하고 각 사업연도별 ha당 단가(2017년/79,350원, 2019년/89,870원)를 재배면적에 따라 산정하여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추풍령면에서는 2017년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150농가에 5,646,310원, 2019년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137농가에 5,970,800원, 2019년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보상금 총 137농가에 5,539,970원을 지급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0.1ha미만인 경작자 추풍령면 계룡리 공석윤 외 3명에게 총 32,36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추풍령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상금 32,3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